

강원지회, 이전 현판식 행사 개최



▲ 2006. 9. 15일 강원지회는 강릉에서 원주로 지회를 이전함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청 원주지청장외 유관기관, 회원사, 대행사 등 안전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전현판식을 갖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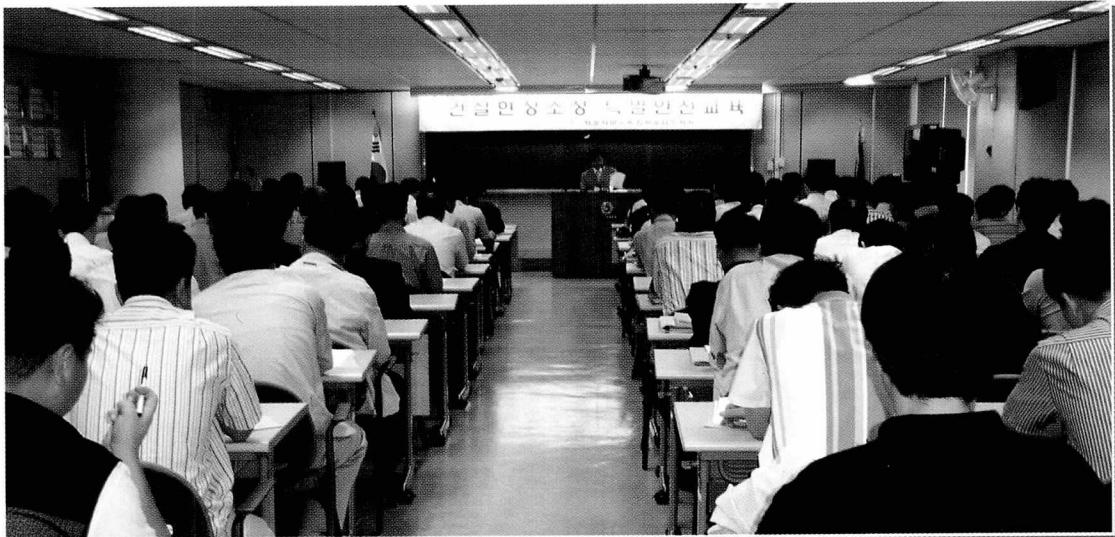
Safety Pictures

경북북부지회, 「제16회 경북안전보건인 산업재해예방 결의대회」 개최



▲ 2006. 9. 20일 경북북부지회는 금오산 자연학습원에서 지역 내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보건인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제16회 경북안전보건인 산업재해예방 결의대회」를 김성경 구미부시장, 배호득 노동부 구미지청장 및 안전보건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노동부, 건설현장소장 재해예방 교육실시



▲ 2006. 9. 13일 서울지방노동청서울남부지청(지청장 朴鍾善)은 관내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제고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건설현장소장 182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공장 서울본부 강당에서 재해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노동부, 유류탱크 폭발사고 관련 사업주 구속

노동부는 경남 밀양에 있는 동물성기름 재활용 공장에서 폐식용유 저저장탱크 보수작업 중 탱크폭발로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대표이사 정모씨(45세)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동 사고는 가연성가스가 가득한 밀폐된 탱크 내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중 용접불꽃이 가연성 가스에 점화돼 폭발한 것으로 사업주가 미리 통풍·환기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은 물론 폭발·화재 등을 미리 감지할 수 있는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작업을 하게한 것이 원인 이였다.

노동부는 앞으로 이와 같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사업주의 사전 안전조치 소홀로 사망사고 등 중대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재해예방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구속 등 관련법을 엄중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노동청, 「환경미화원을 위한 안전보건」기술자료 보급 및 재해예방교육 실시

서울지방노동청은 2006. 9. 22일 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중구·종로구·성북구 등 3개구에 소재한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체의 사업주 및 안전보건업무 담당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재해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교육에서는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환경미화업)의 최근 재해현황 자료와 사고 사례를 다양한 사진자료와 함께 제공하고 아울러 적절한 재해예방 대책을 제시해 줌으로써 이를 환경미화업체 사업주의 안전의식 제고는 물론 재해감소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교육에서는 환경미화업체에 고령근로자가 다수 근무하고 있는 점을 감안, 네오딘의학연구소 소속 간호사가 뇌심혈관계질환 예방교육도 함께 실시하였다.

한편 3개 구청 및 환경미화업체 등에 배포되는 「환경미화원을 위한 안전보건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재해현황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재해의 특징
- 재해유형(주락·전도·협착·화상 등)에 따른 다양한 사고 사례와 예방대책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의 재해율은 2006년 6월말 기준 0.68%로 제조업(0.56%)보다 높으며, 업종 전체 재해율(0.38%)을 훨씬 상회하는 실정이다.

Safety Pictures

노동부, 9. 20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개정 입법예고

내년부터 석면 함유 건축물을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경우 작업의 종류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를 달리하여야 하고 모든 수중작업시 작업자가 흡입하는 공기의 질을 일정기준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산업보건에관한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내용에 따르면, 석면함유 건축물을 해체 또는 제거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소가 실내인 경우 창문, 벽 등을 불침투성 비닐 등으로 밀폐하고, 실외인 경우 석면분진이 흘날리지 않도록 석면 흡입장치를 가동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샤워실 등 위생설비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잠수작업자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의 적용범위를 현행 수심 10m 이상의 수중작업에서 모든 수중작업으로 확대하였다.

잠수작업자가 수중에서 사용하는 공기의 질이 산소농도 20~22%, 이산화탄소 농도 100ppm 이하 등 한국공업규격에 의한 압축공기기준을 유지하도록 공기정정장치의 성능기준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오염물질 유입방지, 미생물 오염방지 등 사무실 공기관리 규정 적용범위를 현행 중앙공급식 공기정화시설을 갖춘 실내공간에서 모든 실내공간으로 확대하는 한편, 사무실 공기관리 기준의 대상인자를 확대(4종 → 9종)하여 사무실내에서 일정수준 이하 (예: 일산화탄소 100ppm, 이산화탄소 1,000ppm 이하 등)로 유지토록 권고 기준화 하였고, 사무실 공기측정·분석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